

(재)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공고 제 2025 - 47호

- 한방천연물산업 신성장 지원 사업 -

# 2025 한방천연물제품 임상시험 지원 사업 모집 공고

---

한방천연물클러스터 기업 제품의 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제품의 효능 입증 등 신뢰성 확보와 질적인 향상을 추진하여 매출 증대 및 제품고도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를 시행하오니 제천한방천연물클러스터 기업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. 8. 21.

(재)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이사장

---

## 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한방천연물산업 신성장 지원 사업(한방천연물제품 임상시험 지원)

나. 사업비 : 22,100천원(평가를 통해 최대 3개 기업 차등 지원) ※ 도비 : 60% / 시비 40%

다. 사업기간 : 2025. 8. ~ 2025. 12. / 약 5개월

라. 주관기관 / 부서 : (재)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/ 천연물산업팀

마. 사업목적

- 제품의 효능 입증 등 신뢰성 확보와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의 질적인 향상 추구

바. 지원대상 : 제천한방천연물클러스터 기업회원 (공고일 기준)

※ 화장품(미용), 의약외품 등 관련 분야 기업 한정

사. 지원내용 : 화장품(미용), 의약외품 등 관련 분야 기업에 한해 안전성 시험, 유효성 평가지원 등 각종 임상시험 지원

※ 동일한 제품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
## 2. 세부내용

- 가. 사업비 : 22,100천원(충청북도비 : 13,260천원(60%), 제천시비 8,840천원(40%))
- 나. 선정기업 : 최대 3개 기업
- 다. 자기부담금 : 지원금의 20% 이상(부가가치세 별도 기업 부담)
- 라. 사업예산 내용 (단위 :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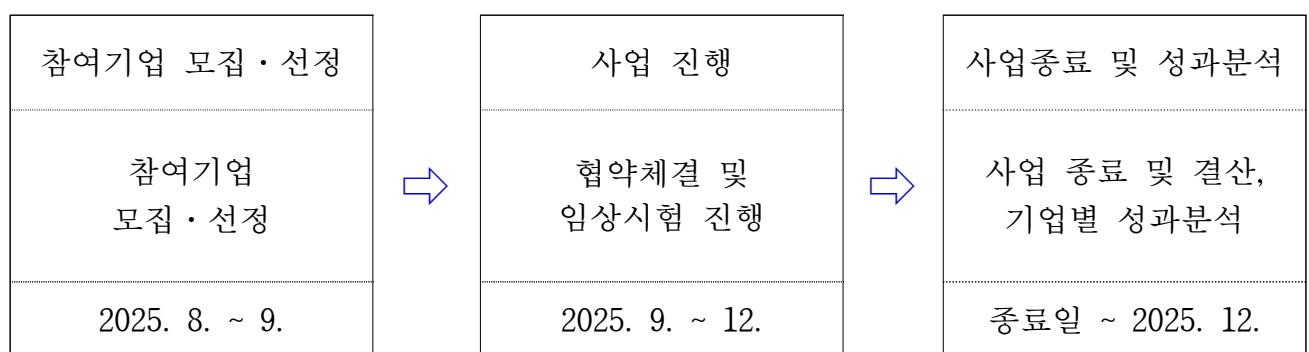
지원금 (예시)	기업부담금		총 액
	보조금의 20% 이상	부가가치세	
8,000,000	1,600,000	960,000	10,560,000

※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며, 기업부담금은 최소 20% 책정 기준임

### 마. 지원분야

- 기능성 화장품 평가
  - 미백기능성, 주름 기능성, 자외선 차단 등
- 화장품 유효성 평가
  - 보습, 탄력, 피지, 피부결, 피부 잡티, 피부주름, 피부밝기, 피부 진정 등
- 안전성 평가
  - 피부자극 인체적용 시험 등
- 각종 분석지원
  -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, 배합금지 및 사용한도성분 분석 등
- 의약외품 임상시험
  - 치아 미백, 잇몸 염증, 충치 예방, 구취 제거, 시린 이 등
- 기타 사업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임상시험 등

### 바. 추진일정



\* 사업 추진 사항에 따라 세부 일정 변동 가능

### 3. 신청절차 및 선정방법

가. 신청 기간 : 2025. 8. 21.(목) ~ 8. 29.(금), 17:00시 까지 [9일간]

나. 제출 방법 : 방문 제출(한방생명과학관 2층 천연물산업팀)

\* 도장 날인 필수 / 공고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흡 시 접수 무효 처리

다. 선정방법 :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업별 차등 지원

※ 신청 기업 수가 저조하거나 미달될 경우 제출한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

라. 문의처 : 천연물산업팀 임동현 대리(043-920-5512)

마. 신청 서류

구 분	제출 서류	제출 수량	비고
1	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	1부	<붙임 1>
2	임상시험 견적서	1부	.
3	청렴이행서약서	1부	<붙임 2>
4	최근 1년간 납세증명서 (지방세 1부, 국세 1부)	각 1부	.
5	사업자등록증 사본	1부	.
6	2023년, 2024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	각 1부	홈택스 발급분

※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후 제출

### 4. 지원 제외 대상

가. 정부 지원사업 및 관내 지원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(보고서 미제출, 기술료 미납부 등)

나. 법인 또는 대표자(일반, 간이 과세자)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
다.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

라.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

마. 기타 기업 선정절차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대표자 또는 기업

## 5. 기타 유의 사항

- 가. 해당 사업은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입증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하고, 제품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여 기술력 제고와 제품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임. 기업은 사전 임상시험 대상 제품 선정, 선정된 제품으로 연구기관과 소통하는 등 사업 진행 일정, 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함.
- 나. 기업은 사전에 임상시험 견적서 및 관련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에 지원하여야 하며, 관련 사항들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에도 포함하여야 함.
- 다. 기업은 임상시험 추진 중 변경되거나 최초 제출한 내용과 달라지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재단에 알려야하며, 사전 소통 및 확인 없이 임의로 진행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.
- 라. 사업 신청과 관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마. 신청 서류 및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및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함.
- 바. 동일한 제품에 한해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선정되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에 패널티를 부여함.

붙 임 1.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【서식 1】 1부.

2. 청렴이행서약서【서식 2】 1부. 끝.